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
■ 정 부 제 출(의안번호 제220353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개요 ..	3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6
[참 고]	1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IV. 검토의견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제1항¹⁾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중 2025년도 발행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법」)²⁾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1)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급망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³⁾을 지원함.

본 동의안에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2025년의 공급망 안정화기금채권 지급보증(발행한도) 규모는 전년(2024년) 대비 원화기준 5조 원 증액된 최대 10조원(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수준임.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발행한도 및 발행실적]

(단위: 억원, 원화 기준)

연 도	2024	2025(안)
발행한도 (보증상한)	50,000	100,000
발행실적	1,900 ⁴⁾ (10월말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승인실적]

(단위: 억원, 원화 기준)

구분	일시	승인금액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2024. 9. 27.	1,520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2024. 10. 17.	7,860
계		9,380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3) 「공급망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4) 표면금리 2.961%, 3년 만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기금집행을 승인하면 승인된 금액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조달된 재원을 통해 기금이 집행되는 구조를 지님.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된 1,520억원에 대한 1,9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이루어져 2024년 10월 말 기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규모는 1,900억원임.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된 7,860억원에 대한 채권 발행은 2024년 4분기에 이뤄질 계획이고, 연말 제4차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추가적 자금지원 승인 및 채권 발행이 이뤄질 예정임.

상기한 대출 방식의 지원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약 1,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할 때 2024년도에는 5조원 한도 중 약 2조원 내외의 지원승인 및 채권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용 부담 없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⁵⁾. 한국수출입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정부는 ①한국수출입은행이 의뢰한 외부 연구용역과 ②외부용역을 바탕으로 한 실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금의 금융지원 규모를 추산함. 두 가지 방식의 산출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조원 한도의 채권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10조원은 ①외부 연구용역⁶⁾에 따라 산출된 자금집행 전망 8.2조원(Case 1, 보수적)~10.3조원(Case 3, 도전적) 중 Case 2의

5) 발행금리 : 시장금리*(자료 : 기획재정부)

* (원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금리 : 2.961%(3년 만기, '24.10.4자)

한국장학재단채권 금리 : 3.046%(3년 만기, '24.9.13자), 3.188%(5년 만기, '24.10.11자)

* (외화) 수은채 금리 : 4.147%(5년 만기, '24.9.5자), 정부채 금리 : 4.576%(5년 만기, '24.6.26자)

6) Deloitte, '24. 5.~8.

금액 9.3조원을 감안하고, ②외부용역을 바탕으로 실수요에 기반한 2025년도 기금 자금수요 8.6조원(Case 1, 보수적)~10.8조원(Case 3, 도전적) 중 Case 2의 금액 9.7조원을 감안하되, 후술할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을 반영한 수치임.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수요 추정]

(단위 : 조원)

지원비율	2025년	
	외부 연구용역	실수요 기반
Case 1(보수적, 80%)	8.2	8.6
Case 2(적극적, 90%)	9.3	9.7
Case 3(도전적, 100%)	10.3	10.8

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대출집행(A) ¹⁾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대응자금 ²⁾ (E)	0.5	0.5	0.5	0.5	0.5	0.5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F=D+E)	9.9	7.8	7.9	9.0	7.7	9.2

자료 : 기획재정부

주 1) 과도한 국가채무보증 규모 증가 방지를 위해 기금 규모를 10조원 이내로 유지 가정

주 2)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봄.

또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의 보증 한도액 10조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필요자금 9조 4,000억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분기별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1	2	3	4	1	2	3	4	1	2	3	4
대출집행(A)	2.1	2.5	2.5	2.5	2.4	2.4	2.4	2.4	2.4	2.4	2.4	2.4
대출회수(B)	-	-	0.1	0.2	0.2	1.5	1.5	1.7	1.7	1.8	1.8	1.9
채권상환(C)	-	-	-	-	0.6	0.7	0.6	0.6	0.7	0.4	1.6	2.3
필요자금(D=A-B+C)	2.1	2.5	2.4	2.3	2.8	1.6	1.6	1.3	1.4	1.0	2.1	2.8
유동성대응자금(E)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F=D+E)	2.3	2.6	2.5	2.4	2.9	1.7	1.7	1.4	1.6	1.2	2.3	2.9

구 분	'28년				'29년				'30년			
	1	2	3	4	1	2	3	4	1	2	3	4
대출집행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대출회수	1.9	2.0	2.0	2.1	2.1	2.2	2.2	2.3	2.3	2.3	2.3	2.4
채권상환	1.5	1.6	1.8	1.9	2.0	1.4	1.5	1.3	2.0	1.7	2.2	2.5
필요자금(D=A-B+C)	2.0	2.0	2.2	2.2	2.3	1.7	1.7	1.5	2.1	1.8	2.3	2.5
유동성대응자금(E)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국가채무보증 필요규모(F=D+E)	2.2	2.1	2.4	2.4	2.4	1.8	1.8	1.6	2.2	1.9	2.5	2.6

자료 : 기획재정부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발행 실적 및 지원성과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4년 동 기금을 통한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6월 27일 「공급망법」이 시행되었으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같은 해 9월 27일 처음으로 1,520억원 규모의 기금지원이 이루어짐. 10월 말 현재 발행된 1,900억원의 채권은 1,520억원 규모의 지원을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10월 17일에 승인된 7,86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2024년 연중 추가로 승인금액에 대응하는 채권이 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승인된 9,380억원의 금액 이외에도 연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고, 대출 방식의 지원과 별도로 약 1,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할 때 2024년도에는 5조원 한도 중 약 2조원 내외의 자금지원 및 채권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역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의 초기 단계인 만큼 면밀한 수요예측, 자금지원 및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49

가. 기금설치 목적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

나. 사업의 내용

□ (사업개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원분야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그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 경제안보서비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5항에 의거 지정된 서비스 및 기반시설

○ 지원대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 (기금 재원조성 규모)

- (연구용역) 기업 IR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선별한 공급망 핵심기업(118개사), 최근 차입금 증가 등 차입가능성이 높은 기업(93개사) 등 총 247개사를 대상으로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약 7.45조원의 기금 자금수요 확인
- 위 자금수요 7.4조원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산업 전체의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자금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10.3조원 수준.
-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여 '25년 8.2조원(Case1) ~ 10.3조원(Case3)의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실수요 기반) 상기 연구용역 수요조사 결과(7.45조원)와 1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신청('24.6.27~7.26) 기업의 '25년 자금수요(3.35조원)를 합산하여 도출한 실수요는 10.8조원
- 위 10.8조원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였고, 이중 Case2(적극적, 90%)인 9.72조원을 기준으로 '25년 대출회수, 채권상환 금액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 한도 9.9조원 도출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금지원 (A)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 (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 (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 (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 한도(F)=(D)+(E)	9.9	7.8	7.9	9.0	7.7	9.2

*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 '25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조원 한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 **(지원조건)**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조건
부과 가능

* 이익의 배당(주식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의 인상 등

다. 지원자금 회수 계획

☐ 채권만기 상환일정

-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만기 지정

☐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수립, 기금 지원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 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자금회수 도모

☐ ❶지원대상 사업확인, ❷수은의 금융심사, ❸기금운용심의회의 최종심의 등 단계별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지원절차를 거쳐 기금의 지원여부 결정

- **(사업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확인

- **(금융심사)** 수은의 금융 심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사업타당성*, 상환능력** 등 금융지원 타당성에 대한 독립적인 종합 심사를 진행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의 사업 이행능력, 영업기반 및 사업전망 등

** 차주(연대보증인) 및 사업주 등의 신용상태, 상환 계획 등

- **(최종심의)** 국회 추천 2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명한 심의를 통해 기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예정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안) :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인, 기재부·금융위·산업부·무역협회 각 추천 1인, 수출입은행 임직원 1인 총7인

-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규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생략 및 하부 위임 가능하나, 기금운용심의회에 사후 보고 및 추인 필요

□ 수은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금 맞춤형 관리대상 리스크를 선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면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 및 대출원리금 적기 회수 도모

○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신용평가, 한도관리, 자산건전성 관리 등), 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부문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의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 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위험
- (환리스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금리리스크)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리부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유동성리스크) 자금수급 미스매치, 예기치 않은 자금부족 등으로 만기 도래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위험

○ **(사후관리)** 자금집행 후에는 수은의 사후관리 노하우 및 자원을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 사전 파악 및 면밀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대출원리금 회수 도모

- 기금 포트폴리오의 기업·계열·산업·국가별 편중 방지 위하여 각종 한도 관리, 한도 소진율이 높은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실시 등
- 자금용도 확인, 차주 신용도 정기점검, 대출금 회수, 조건변경 및 부실사업 관리 등

참고2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규모 추정내역(예시) [자료 : 기획재정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 개요
자원개발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주요자원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광산/유가스전 개발사업 대출/보증
자원가공	개발/확보된 자원(광물, 원유)을 가공(제련, 정제 등)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자원가공 사업 대출/보증
식량안보	민생 고연관 농산품의 자급률 및 안정적인 수입에 기여하는 해외 식량자원 확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식량지원 비축·저장시설 구축자금 대출/보증
오프테이크 파이낸스	개발 예정 광산/광구에서 생산될 산출량의 일정비율을 장기로 구매하는 계약(Offtake Agreement)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장기구매계약(Offtake) 대출/보증
자원도입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자원을 도입하는 거래에 대한 금융 지원 (예시) 자원수요 국내기업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
재자원화	사용이 끝난 소재/부품/장비를 회수하여 자원을 추출 및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재자원화 영위 국내기업 국내사업 대출/보증
국내 물류 인프라	국내에 구축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항만, 저장시설 등 물류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 물류 인프라 운영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해외 물류 인프라	해외에 구축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항만, 저장시설 등의 물류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 대출/보증
물류서비스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출/보증
선박·항공	국가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박·항공기 확보 및 정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시) 선박·항공기 도입 사업 대출/보증
해외 소부장	국내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동반진출 등 해외 소부장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소부장 생산기지 구축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해외 종합생산	해외 종합생산체계(완성품 생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수입 대체	공급망 중요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기술확보 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기업 R&D 자금 대출
리쇼어링	해외 국내기업이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 또는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 생산기지 구축 유턴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프렌즈 쇼어링	해외기업이 국내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대출/보증
위기 지원	긴급상황 발생시 해외 원료 및 소부장을 도입하는 국내기업(프렌즈쇼어링 기업 포함)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공급망 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 ‘프렌즈쇼어링’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해외투자 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설정